



**(국토교통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**

[시행 2023. 8. 17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73호, 2023. 8. 17., 일부개정.]

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, 044-201-4535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복구비용 산정기준 등)**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구분	지원항목	규격	단위	피해주택 연면적	단가	비고	
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	주택 복구	주택 파손 (유실·전파)	동	66㎡ 미만	66,000,000		
				66~82㎡ 미만	80,000,000		
				82~98㎡ 미만	93,000,000		
				98~114㎡ 미만	106,000,000		
				114㎡ 이상	120,000,000		
		주택 파손 (반파)	동	66㎡ 미만	33,000,000		
				66~82㎡ 미만	40,000,000		
				82~98㎡ 미만	46,500,000		
				98~114㎡ 미만	53,000,000		
				114㎡ 이상	60,000,000		
	주택 파손 (소파)	동	900,000				
	주택 침수	세대	3,000,000				
	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	주거비	주택 피해 (유실·전파)	세대	66㎡ 미만	20,000,000	
					66~82㎡ 미만	24,000,000	
					82~98㎡ 미만	28,000,000	
98~114㎡ 미만					32,000,000		
114㎡ 이상					36,000,000		
주택 피해 (반파)		세대	66㎡ 미만	10,000,000			
			66~82㎡ 미만	12,000,000			
			82~98㎡ 미만	14,000,000			
			98~114㎡ 미만	16,000,000			
			114㎡ 이상	18,000,000			

**제3조(재검토기한)**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9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부칙** <제2023-473호, 2023. 8. 17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